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02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24227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변 론 종 결	2018. 5. 11.
판 결 선 고	2018. 6.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부터 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 1,687,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 망 B은 2006. 12. 27. C EF쏘나타 LPG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02

차'라 한다)를 공매로 취득하여 2007. 1. 11. D로 번호를 변경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 등록을 마쳤다.

나. 이후 망 B은 2007. 5. 1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장녀인 원고(1950년생)와 장남인 E은(1957년생)이 있었으며, 2007. 10. 11. 이 사건 자동차의 번호가 F로 변경등록되었다.

다. 원고는 2015. 6. 30. 망 B의 사망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7.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내인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과거 5개년분 자동차세 1,168,200원[2011년 제1기분부터 2015년 제1기분까지 9건 × 129,800원(본세 99,850원, 지방교육세 29,950원)]을 소급하여 부과하였고, 이후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부과하여 2011년 제1기분부터 2017년 제1기분까지 총 13건, 자동차세 1,298,050원, 지방교육세 389,350원 합계 1,687,4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7. 13.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망 B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상속 한정승인을 받았다(부산가정법원 2015느3752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은 원고 부친 소유의 차량으로서 부친 사망 후 원고 명의로 이전되지도 않았으며 원고는 상속 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02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125조 제2항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연장자 순위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998조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는 망 B의 사망일인 2007. 5. 17.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망 B의 상속인 2인 중 50%의 상속지분을 보유하고 나이가 더 많은 원고는 당연히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2) 또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의 소유 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이고, 이 사건 자동차세는 망 B의 사망일 이후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 사실에 대하여 부과한 것이므로 원고가 상속의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더라도 상속 이후 성립한 원고의 자동차세 납부의무에는 하등의 영향이 있을 수 없다(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망 B의 사망일 이후인 2007. 10. 10.부터 현재까지 G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법원에 제출된 2018. 2. 2.자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에 의하면 위 G은 원고의 아들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자동차는 망 B의 사망 이후에 원고의 아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02

재판장 판사 최병준

판사 안희경

판사 조연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02

별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연장자. 끝.